

3.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여기에 실린 자료는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1989년 1월에 발간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배경 설명」과 동 위원회가 연례적으로 펴내는 각국의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 중 최근 3년간의 북한관련 부분 전문을 번역 수록한 것이다.

국제사면위원회는 1961년에 창립되어 현재 150개 국가에 120여만명의 회원을 가진 국제인권옹호단체로서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주로 양심수의 석방과 정치범에 대한 공정하고도 신속한 재판, 사형 폐지 및 고문 방지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편집자 주〉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배경 설명

개요 :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서술은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신뢰할 만한 정보를 북한 안팎에서 입수하기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이다. 북한 언론매체들은 국가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데, 체포·재판·수인·교도소·사형제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형법의 근거에 관한 보도조차 거의 다루지 않는다. 외국언론 특파원들의 취재활동 역시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

북한 당국의 비밀주의는 형법·형사소송법까지 미치고 있다. 이 법률들은 1976년에 개정되었는데, 활자화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분명치 않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이 사실에 관해 북한 당국에 거듭 문의했으나 아무런 회답도 받지 못했다.

중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교포들은 비교적 정기적인 접촉을 북한 주민들과 갖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 및 기타 국제인권단체들에게는 한만국경지대에 밀집해 살고 있는 한인교포사회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그들이 비판적인 발언을 했을 경우 북한 친지들이 보복을 당하는 게 아닐까 하여 북한의 상황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꺼린다. 북한으로부터의 공식적인 해외이주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극소수의 사람들이 북한으로부터 탄출해 오기는 했으나, 보통 그들은 국제사면위원회가 요구하는 종류의 적절한 그리고 신빙도가 높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북한은 1981년에 「시민적·정치적 제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이 국제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결사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기 위해 투옥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국제사면위원회에 담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에 따르면 김일성 주석, 그의 아들이자 정치적 후계자 김정일 그리고 조선노동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투옥당하기 십상이라고 한다. 한때 체포당했으나 지금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따르면 반체제분자라는 혐의를 받은 사람들은 때로는 재판 없이, 또 때로는 항소권을 박탈당한 채 집단 노동수용소에 장기간 구금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정보에 따르면 광범한 사회적 경범죄도 정치적 범죄로 간주되어 벽지로 추방되거나 투옥당한다고 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 당국이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사실을 놓고 인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고 이를 환영한 바 있다. 그러나 1981년 이래 동 규약의 규정들이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가에 관한 보고가 너무 빈약한 사실과 관련하여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 당국에게 우려를 표명했다.

개개 사건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당국에 의해 차단되고 있지만,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 인민들이 양심상의 신념을 비폭력적으로 표명했을 경우 투옥당하며, 또 투옥을 허용하는 법적 절차

가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적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정치적 구금: 1988년에 국제사면위원회가 입수한 인쇄되지 않은 자료는 정치적 구금에 관한 몇몇 사례를 다루고 있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 자료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과의 면담 및 북한 주민이 일본 친지들에게 비밀리에 보낸 편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한다.

이 정보에 따르면 청평·회령·경성·사리원·요덕·영변·용강 등에 집단노동수용소가 있으며, 1987년 4월 현재 최소한 11만1천명이 갇혀 있는데, 상당수 또는 전부가 정치범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한다. 그 밖에도 소규모의 수용소가 최소한 4개 더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평양 근교에, 또 하나는 온성에 있다고 한다. 이 수용소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체포·구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외국인이 관련된 사건이나 간첩사건에 한해 북한 당국과 언론에 의해 극히 드물게 발표된다.

북한의 정치적 구금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설명은 아마 Ali Lameda가 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양심수인으로서 겪은 일들」일 것이다. 이 책은 1979년에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간행되었다.

라메다는 베네수엘라 공산당 당원이자 시인으로 북한 외교부가 관장하는 대외출판기관의 스페인어반 책임자 일을 맡기 위해 1966년에 북한으로 갔다. 그는 1967년 9월 체포당해 기소·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1년간 구금당했다. 석방 후에도 연금상태는 계속되었다. 두달 후 다시 체포당했는데, 이번에는 재판에 회부되어 태업예비 및 간첩혐의로 20년형이 선고되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라메다와 그의 동료인 자크 세디요(프랑스인, 역시

20년형이 선고되었다)를 양심수인으로 인정하고 석방 캠페인을 벌였다. 알리 라메다는 1974년에 석방되어 출국했고, 자크 세디요는 석방되고 나서 몇개월 후인 1976년 1월 평양에서 사망했다.

재판: 북한의 재판에 관한 정보 중 국제사면위원회가 주목하는 유일한 실질적 정보는 알리 라메다의 증언이다. 두번째 체포당해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의 일을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법정은 국가보위부의 관할을 받고 있었다. 법원 직원들과는 별도로 그들이 중앙재판소라고 부르는 기관이 파견한 사람이 임석했다. 그 사람이 판사와 검사의 역할을 아울러 수행했다. 내게는 이른바 변호인 한명이 선임되었다. 재판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법정에는 두명의 정복 경찰관과 통역을 맡은 한 젊은이뿐이었다. 재판은 하루에 끝났다. 오전 9시에 개정해서 오후 5시에 끝난 것이다. 나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하루 종일 아무 음식도 먹지 못했다. 재판의 전과정을 통해 내가 일반범죄보다도 한결 더 중대한 정치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재판의 형태는 내가 이에 앞서 받은 수사과정과 똑같았다. 나는 계속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법정은 어떤 특별한 죄상을 전혀 제기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공소사실의 제기가 없었다는 말이다. 피고인이 해야 할 일은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므로 재판부로서는 증거 따위는 필요가 없었다. 내게는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없었고, 오직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법정의 판결은 피고인의 자백에만 근거했다. 검찰관은 내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입을 열어 모든 것을 자백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는 내가 아무 죄도 짓지 않았으며, 정부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북한에 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도중 나는 내가 선임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했고, 또 재판의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나의 요구는 부르주아적이라는 이유

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가 몇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나를 제지했다. 나에게는 자기를 변호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마침내 검찰관이 나의 혐의 사실을 밝히기 시작했다. 내가 태업·간첩행위·거점확보 등의 목적을 위해 북한에 왔다는 것이 그 요지였다. 이 주장에 대해 나는 내가 북한 당국의 초청을 받았으며, 내가 CIA의 지령을 받았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때 검찰관은 형법의 한 대목을 읽어 주었다. 내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가를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북한이라는 나라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되고 말았다. 검찰관은 논고를 마치면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른바 변호인이 변론할 차례가 되었다. 나는 그 전에 그와 30분밖에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그는 김일성에 대한 찬사를 장황하게 늘어놓았으며 나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다음 금고 20년에 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5분간 휴정한 다음 재판부는 나에게 20년의 강제노동형을 선고했다."

헌법: 1972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인정하고 있다(53조). 신앙의 자유는 54조에서 보장되고 있으며, 다른 조항에서는 진정한 민주적 권리와 자유 등이 보장되고 있다(50조). 그러나 11조, 49조, 67조 등은 사회공동체의 권리 또는 집단주의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헌법 제10장은 재판소와 검찰소의 직능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자기방어권과 재판부의 독립은 138조와 140조에 명시되고 있다.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 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38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수행한다"(140조).

그러나 헌법은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되는 권리라든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가 침해당했을 경우 관할 법원에 의해 효율적인 구제조치가 강구된다는 사실을 명시해 놓지 않았다. 또 북한 헌법은 고문 또는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물론 다른 법률로써 이러한 행위를 금지할 수는 있다.

북한 헌법은 해외이주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방문자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합법적으로 해외이주를 신청한 사례가 한건도 없었다고 한다.

사형제도: 북한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사형선고 및 집행 건수에 관해 상세한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1981년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제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했고, 1984년에는 북한대표가 동 규약의 준수상황에 관한 제1차 보고서를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때 이 대표는 "사형은 간첩행위 또는 모살과 같은 특별한 범죄에만 적용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사면위원회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반역·태업·살인·강간·간통·공금횡령 등에 대해 사형이 선고·집행되었다는 미확인 정보를 입수한 바 있다.

■ 연례 보고서

〈1989년 보고서〉

소식통에 의하면 약 40명의 대학교수와 학생들이 감금되어 있고 2명의 재일 한국인 양심범들이 수감되어 있다. 종전과 같이 북한당국과 언론들은 체포, 정치재판, 투옥, 사형에 관한 정보를